



 목포시
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3시 22분



목포시치매안심센터

목포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, 상담, 조기진단 및 교육 등 유기적인 「치매 통합관리 서비스」의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,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치매안심센터 운영

- 치매 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, 등록 및 사례관리(내소상담, 전화상담, 가정방문)
-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
- 등록 대상자 가족지원(치매 돌봄 교육, 가족교실, 치매가족 자조모임지원 등)
- 등록 대상자 실터운영(작업치료, 원예치료, 음악치료, 미술치료 등)
- 인지건강프로그램(작업치료, 원예치료, 음악치료, 미술치료, 운동치료 등)
-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·홍보
- 치매전문자원봉사자(치매플러스) 양성관리사업



치매 조기검진 사업

- 대상 :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주민(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)
- 장소 : 목포시 수문로 32, 트윈스타 행정타운(3층 치매안심센터) ☎ 061)270-4271-4275
- 일시 : 월~금 09:00~18:00 (공휴일 휴무)

검진절차(신분증 지참)

- 1 치매선별검사 (CIST) [치매안심센터]
- 2 치매진단검사 (신경심리검사), 전문의 진료 [협력의사]
- 3 치매감별검사 (혈액검사, 뇌 영상 촬영 등) [협력병원]

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

대상자 선정기준

- 연령기준 :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목포시인 만 60세 이상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(상병코드 F00~F03, F10.7, G30, G31, G308, G309, G31.00, G309 등)
- 치료기준 :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소득기준
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 → 국도비지원
 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인 자 → 전액 시비지원(2023년 신규사업)
 - * 선정 제외 대상 :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) 등
 - * 중복 지원 제외자 :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환·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,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

구비서류(신분증 지참)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국도비 지원)	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(전액 시비지원)
1. 신분증(본인,대리인) 및 가족관계증명서	1. 신분증(본인,대리인) 및 가족관계증명서

2. 통장사본(본인,대리인)	2. 통장사본(본인,대리인)
3. 건강보험가입자 성함, 주민등록번호	3. 처방전(치매코드, 치매약이름 기재)
4. 처방전(치매코드, 치매약이름 기재)	4. 진료비·약제비 계산서(발생시 매번 제출)

- 지원내용 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치매 치료비(약제비·진찰료)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방법 : 목포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- 문의처 : 목포시치매안심센터(☎ 061-270-4275,4289)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

